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9. 25.

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접수일자 : 2008년 9월 11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9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 9. 23)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철)

가.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으로 우리구 자치법규에서 인용되고 있는 행정각부 및 장관명칭의 개정이 필요하나, 단순한 명칭병정 사항이므로 개별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개별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행정각부의 명칭을 변경
 - “행정차치부”를 “행정안전부”로
 -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 “상공부”를 “지식경제부”로
- 개별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행정각부장관의 명칭을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사회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행정각부 및 행정각부장관에 대한 명칭 등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요구되는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을 포함하여 총12개의 조례임.
-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단순한 명칭변경 등에 국한하여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을 기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0 호
----------	---------

제출연월일 : 2008.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으로, 우리구 자치법규에서 인용되고 있는 행정각부 및 장관명칭의 개정이 필요하나, 단순한 명칭변경사항이므로, 개별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행정각부의 명칭을 변경.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 상공부 → 지식경제부

나. 개별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행정각부장관의 명칭을 변경..

-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예산청장 →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재무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사회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조례 : 12건(14개 조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제22조 (행정각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 생략사유 : **법규상의 단순 명칭인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사무 없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0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상공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인적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7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실천협의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